

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제안요지

1. 개정이유

- 2016년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(2016.6.2)에 대한 합의사항 반영

2. 주요골자

- 승무보조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2016년6월1일부터 적용
 - 1종 : 월 120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3급 승무직(교대,교번근무자)에게 지급
 - 2종 : 월 137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4급 이하 승무직(교대,교번근무자)에게 지급
 - 3종 : 월 145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3급 승무직(통상근무자)에게 지급
 - 4종 : 월 175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4급 이하 승무직(통상근무자)에게 지급
- 학자보조금 지급대상 개정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, 평생교육법 제31조,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취학한 자녀 (안 제11조 제1호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근거 : 2016년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
- 나. 절차 : 부패영향평가 → 사규심의 → 사장결재 → 이사회 의결
→ 개정 · 시행

붙임 1.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(안)

2. 복지후생규정 일부개정(안) 신규대비표. 끝.

『복지후생규정』 일부개정규정(안)

복지후생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종 : 월 120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3급 승무직(교대,교번근무자)에게 지급
2. 2종 : 월 137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4급 이하 승무직(교대,교번근무자)에게 지급
3. 3종 : 월 145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3급 승무직(통상근무자)에게 지급
4. 4종 : 월 175천원을 승무분야 현업 4급 이하 승무직(통상근무자)에게 지급“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지급대상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, 평생교육법 제31조,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취학한 자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학자보조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으로 신규지원 대상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한도액 범위내에서 2016년도 1분기 분부터 지급한다.

